

#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

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접수기간: 2021. 5. 24.(월) ~ 6. 11.(금) 17:00까지

■ 대상: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

⇒ **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** 확인 필수

(확인방법: 종합정보시스템-수업업무-교직업무-교직사정안내)

■ 주의사항

● 교직 복수 이수 중인 학생은 주전공에만 제출합니다.

● 기존에 서류를 제출했던 학생(현재 졸업연기증인자 등)도 반드시 다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.

⇒ '7호기준' 대상자(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) 포함

● **졸업연기예정자, 초과학기희망자(졸업학점 부족)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**

⇒ 졸업(교직)학점 부족한 학생은 **여름계절수업**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

● **교직포기**를 원하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.

⇒ 단, <교직 포기원>을 반드시 제출(사범대 행정실(5126))

● **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교직 필수과목/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논문/시험 이수 후 졸업연기신청 해야 합니다.**

⇒ 졸업논문/시험을 미이수하여 수료자가 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함.

● 식품영양학과의 경우, 영양사면허증 취득 후 발급 가능합니다.

⇒ 단, 영양사면허증 취득 전 조건부(영양사면허증명서 제출)합격 후 30일 이내 면허증 제출시 가능

■ 원서출력: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업무 → 교직업무 → 무시험검정원서출력 후 본인 날인

■ 제출처: 소속학과(전공) 사무실(교직복수중이라도 원서는 주전공에만 제출)

■ 제출서류

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

● **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(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, 건강진단서) 각 1부.**

⇒ **성범죄경력 관련 서류**는 교무처에서 경찰서로 일괄 발급요청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제공동의(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)를 사전에 제출

⇒ **건강진단서 제출(개별 발급)** ※[건강검진진단서 관련 유의사항]참고

● 영양사면허증 사본(원본 대조필,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) 1부.

■ 기타 안내사항

● **인적사항 정정 관련 안내**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)과 실제 인적사항이 상이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
\*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: 주민등록등본 1부

\* 주민등록번호 정정: 주민등록초본 1부

◎ **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안내**

\* **대상자:** 2021. 6. 23.이후의 무시험검정 대상자

\* **내용:** 초·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[교사자격취득 기준 결격사유]에 대한 내용이 신설(아래 법령 참고)되어 안내하오니 서류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신설 조문〉

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(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2,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내용 동일)  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
[시행일: 2021. 6. 23.]

[건강검진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]

- **검진종류:**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, 일반적인 요검사가 아닌 **약품소변검사(TBPE) 결과**를 의사가 확인해주는 진단서의 양식이어야 함. **※ 종합건강검진 아님 주의**
- **진단서내용:** 진단서에 반드시 대마·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.
- **서류 기준일:**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
- **검사 가능 의료기관**  
의사 진단서는 대학병원, 병원,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,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.  
\* 건강검진 가능 병원 문의(방문 시 신분증 지참, 검사비용 개인 부담)
- ※ **건강검진(약품소변검사)진단서는 검사 비용이 발생하므로, 반드시 교직사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(상세문의는 교무학사부 053-850-5133)**

2021. 5.

교 무 처 장